

대구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0가합20687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배기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민석, 김민수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6. 27.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5년경 발발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에서 벌어진 전쟁(이하 ‘베트남 전쟁’이라 한다)에 1964년 9월경 이동외과병원 등 비전투병을 파견하기 시작하여 1965년 10월경부터 전투병을 파병하였고, 1973년 3월경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대를 모두 철수시켰다. 나. 원고들은 1965년 10월경부터 1973년 3월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임무를 수행한 군인(이하 ‘이 사건 참전 군인’이라 한다)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¹⁾ 다.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정부는 1966. 3. 7. A 대사를 통해 당시 외무부장관 B에게, 베트남 전쟁에 국군 전투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면 국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장비를 지원하고, 추가 파병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이하 ‘A 각서’라 한다)를 전달하였고, 이후 베트남 전쟁에 국군 전투 병력이 추가로 파병된 바 있다.

라. 한편 미국 정부는 1970. 2. 23.부터 진행되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에서 A 각서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A 각서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불가피하게 공개할 경우에도 ‘각서 내용 중 여론을 자극시킬 부분(군원이관, 주월한국군 장병에 대한 수당 및 전사자에 대한 보상 문제)을 삭제하거나 또는 적절히 표현을 바꾸어 공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마. 또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1978. 10. 31. 작성한 한미관계 보고서(위원장의 성명을 인용하여 일명 ‘R 보고서’라고도 한다. 이하 ‘R 보고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미국 정부로부터 베트남 전쟁 파병 부대에 대하여 미군의 보수 수준에 가까운 금원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미국은 피고에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우리 국군에게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투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전쟁준비금 및 전투수당(이하 '전쟁준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전쟁준비금 등으로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전투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A 각서, R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위 전쟁준비금 등 중 극히 일부만을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해외파견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쟁준비금 등을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행위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참전 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수당 중 일부분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법령

■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군인은 이 법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 금전이나 물품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4.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1)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참전 군인이 미국 정부에 대하여 직접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군인보수법에 규정된 보수 외에 어떠한 형태이든지간에 보수의 지급 및 요구를 금지한 구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가 구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이 제출한 보고서(갑 제2호증)는「S」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외무장관 보고)이라는 제목 하에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A 각서의 공개를 반대하고, 불가피하게 공개하여야 할 경우 여론을 자극시킬 부분(주월한국군 장병에 대한 수당 및 전사자에 대한 보상문제 등)은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R 보고서(갑 제9호증)에 ‘고율의 해외근무수당이 대한민국 정부로 송금되었지만 군인들에게 지불된 금액은 상당히 적었다’는 T 대사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 인물의 개인적인 의견 또는 증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곧바로 위 발언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거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 작성 보고서(1970. 8. 24.)(갑 제7호증) 역시 「미국상원의 주월한국군 추가수당지급 중지안 통과(외무부 보고)」라는 제목 하에 ‘70. 8. 20. 미상원은 군사조달법안 심의 중 U 상원 외교위원장이 주월연합군 중 미국이 지변하여 온 해외근무 및 전투수당을 미군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액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음’ 및 ‘본 수정안의 통과는 한국정부측과의 교섭에서 미측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며, 극단적인 경우 V 한국군의 철수를 암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 사건 참전 군인에 대하여 직접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이 갑 제5호증으로 제출한 문서는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에서 작성한 문서일 뿐 1970. 2.경 베트남 전쟁에 사용된 돈을 조사하기 위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W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청문록 자체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재된 문구도 ‘주월 미군 1인당 유지비는 1년에 1만 3천달러이다. 주월 한국군 1인당 유지비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이 사건 참전 군인에게 미군과 동일한 수준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⑤ 결국 A 각서 및 이에 대한 외무장관 보고문서, R 보고서 등은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국제외교, 국내 및 미국의 정치상황 등이 반영된 사료로서 가치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존재 및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참전 군인들의 보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다거나, 그러한 법률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실증명의 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각 문서를 제출하는 외에 미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지급청구권의 성립 및 범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설령 이와 달리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각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미국으로부터 위 전쟁준비금 등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참전 군인들에게 전투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유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이 사건 참전 군인이 베트남 파병 근무를 마침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전투수당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었을 시점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7. 15.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준범, 판사 이경한, 판사 선승혜

별지

1) 망 C, D, E이 이 사건 소송계속중 사망하여 원고 F, G, H이 망 C을, 원고 I, J, K, L, M이 망 D을,

원고 N, O, P, Q이 망 E을 각 수계하였다.